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합1026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148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합102615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용

피고B(한국명: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서

변론 종결 2023. 7. 12.

판결 선고 2023. 8.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8. 7. 12. 체결한 별지 기재 연대채무계약을 750,306,67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1,097,7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1) 원고는 피고의 오빠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부동산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5. 6. 19.부터 2018. 1. 22.까지, 2020. 8. 12.부터 2022. 9. 7.까지 각 위 F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였고(2020. 8. 12.부터 2021. 1. 22.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E은 2018. 1. 22.부터 2021. 1. 22.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였다.
-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F과 D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은 내의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2017. 6. 1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20. 6. 19. 퇴임하였고 2022. 1. 14.부터 2022. 4. 26.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F 사이의 각서 작성 등

피고와 원고, F은 2017. 6.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원고와 F은 2017. 7. 3. 이 사건 각서를 공증인 G 사무소 등부 2017년 제8806호로 인증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각 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1) 3억 원, 2017. 2. 15.부터 월 이자 200만 원

(2) 2억 원, 2017. 3. 28. H은행 아파트 담보

1억 6,000만 원, 2017. 4. 25. H은행 아파트 담보

이자는 월 3,000,000원이며, 단 은행 이자는 매달 채무자가 부담한다.

(1), (2)번은 2018. 12. 31.까지 전 금액을 변제기로 한다.

(3) 2017. 5. 5. 미화 14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17. 5. 8. 135,000달러

이자 2017. 12. 31.까지 25,000달러

총합계: 300,000달러

* (3)번 총합계금액 300,000달러는 미국으로 201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 월이자 3,000달러씩 지불한다.

(4) 2017. 6. 26. 채권자 아파트 담보로 | 에서 2억 5,000만 원을 빌렸으며, 2017. 9. 25.까지 에 변제하고, 에 대한 이자는 매월 채무자가 부담한다.

* (1)번과 (2)번에 대한 이자 2017. 2. 15.부터 6. 15.까지 200만 원 x 4 = 800만 원

2017. 6. 15.부터 6. 30.까지 100만 원

2017. 3. 28.1) 부터 6. 30.까지 300만 원 x 3 = 900만 원

1,800만 원

위 이자는 2017. 6. 기준으로 변제한다.

2017. 6. 25.

연대채무자: 원고

연대채무자: F (사내이사) A

위 내용을 확인함. 2017. 7. 1. 원고(자필서명)

다. 피고와 원고, D 사이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피고와 원고, D은 2018. 7. 12. 아래와 같이 D을 연대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고(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하고, 이 사건 각서와 상환계획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서 등'이라 한다), D은 2018. 7. 17.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J 등부 2018년 제9992호로 인증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E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대한 인증을 위 법무법인에 촉탁하였다.

추가 상환계획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모든 내용은 이전 공증(동부 2017년 제8806, 이 사건 각서를 말한다)과 동일하며 아래 내용을 추가함.

1. K 계약 시 | 대출금 250,000,000원 상환함과

이자: (2017. 7. 1.~2018. 6. 30.) 68,000,000원과 (2018. 1. 31.~6. 30.) 14,000달러 지불함.

2. 차후 은행대출 실행이나 매매 시 상환내역

(1) 300,000달러

(2) 일금 300,000,000원

(3) H은행 대출금 360,000,000원

(4) 이자 2018. 7. 1. ~ 상환일 까지

3. K 완공 후 미상환금(원금 + 30%)을 재설정함(설정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함).

위 내용의 순서대로 2018. 12. 31.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함.

※ 대전 동구 L에 설정을 임시 해지하기 위해 추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함.

2018. 7. 12.

채무자: 원고

연대채무자: D 대표이사 A

라. 피고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 사이의 관련 분쟁의 경과

1) 피고는 2019. 7. 8.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서 등에 따른

대여금 및 약정금[① 대여금 3억 원2) ② 대출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와 관련한 약정금

9,000만 원(= 2017. 3. 28.부터 2019. 9. 28.까지의 30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의 이자)3), ③ 대여원리금 미합중국 통화 30만 달러4)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연 12%(= 월 3,000달러 × 12개월/30만 달러)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5)]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14.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5317,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2)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21. 6. 24.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0나15100).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9. 30.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59022).

마. 피고의 D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및 무자력 등

1) 피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로서, 대전지방법원 M 배당절차에서 2021. 3. 12. 114,229,291원을, 대전지방법원 N 배당절차에서 2021. 3. 12. 86,003,508원을, 대전지방법원 O 배당절차에서 2021. 3. 26. 380,864,988원을 각 배당받았다(이하 위 배당금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

2) 한편, D은 2018. 7. 12. 이 사건 상환계획서 작성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D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D에, 2017. 1. 12.부터 2018. 6. 25.까지 합계 76,314,267원을 대여하였고, 2017. 1. 20.부터 2018. 6. 20.까지 D의 제3자에 대한 채무 합계 673,992,406원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총 750,306,673원(= 76,314,267원 + 673,992,406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D은 무자력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2018. 7.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9,000만원 및 미화 30만 달러의 대여금 채무에 관한 연대채무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채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연대채무계약을 피보전채권인 750,306,673원 한도 내에서 사행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채무계약을 근거로 승소한 이 사건 관련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D을 상대로 강제집행하여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 581,097,787원[= 114,229,291원(대전지방법원 M) + 86,003,508원(대전지방법원 N) + 380,864,988원(대전지방법원 O)]을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이 이 사건 연대채무 계약 당시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원고는 당시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무자력 상태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6), 이 사건 연대채무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D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점, ③ 원고는 본인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을 연대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서, D 대표이사인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자필로 서명까지 한 점(이 사건 각서 하단에 기재된 "위 내용을 확인함 2018. 7. 1. A"라는 원고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시점인 2018. 7. 12.에는 위 연대채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4. 1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의 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아래 예비적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4. 예비적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취지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2.부터 2018. 6. 25.까지 D의 계좌나 D회사 P카드 대금 등으로 합계 76,314,267원을 송금한 사실 및 2017. 1. 20.부터 2018. 6. 20.까지 적요란에 "서대문세무서조사", "법원인지수수료", "국고납부" 등을 기재하여 합계 673,992,406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D이 원고에 대하여 약 7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대표이사 E 명의로 2023. 7. 6.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송금 사실과 D의 재무상태표(갑 제2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에 위 금액 상당을 직접 대여하거나 D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길연

판사허인성

판사서제석

별지

- 1) 갑 제4호증의 1에는 '2017. 3.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서의 (2)항 기재에 비추어 '2017. 3. 28.'의 오기로 보인다.
- 2) 이 사건 각서 (1)항 및 이 사건 상환계획서 2의 (2)항에 기재된 돈이다.
- 3) 이 사건 각서 (2)항과 각서 말미, 이 사건 상환계획서 1항과 2의 (4)항에 기재된 이자이다.
- 4) 이 사건 각서 (3)항 및 이 사건 상환계획서 2의 (1)항에 기재된 돈이다.
- 5) 이 사건 각서 (3)항, 이 사건 상환계획서 1항과 2의 (4)항에 기재된 돈이다.
- 6) 2022. 4. 14.자 소장 3면 참조